|  |  |  |
| --- | --- | --- |
| **과기부•재정부•국가세무총국의**  **<고신기술기업 인정 관리방법> 개정 및 인쇄발부에 관한 통지**  국과발화[2016]32호  각 성•자치구•직할시 및 계획단열시의 과기청(위•국), 재정청(국), 국가세무국, 지방세무국 :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 및 그 실시조례의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과기형 기업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고 대중창업•만민혁신을 촉진시키며 신기술•신경영방식 창조 및 신공급의 생력꾼을 육성하고 경제의 업그레이드와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과기부,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은 <고신기술기업 인정 관리방법>을 개정 및 보완하였다. 국무원의 승인을 거쳐 <고신기술기업 인정 관리방법> 개정본을 인쇄발부하오니 따라서 집행하기 바란다.  과기부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2016년 1월 29일  고신기술기업 인정 관리방법  제1장 총칙  제1조 고신기술기업의 발전을 지원하고 격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이하 '<기업소득세법>'),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이하 '<실시조례>')의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이 방법에서 고신기술기업이라 함은 <국가에서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고신기술 분야>내에서 연구개발 및 기술성과의 전환을 지속적으로 진행하여 기업의 핵심적•자주적 지적재산권을 형성하였고 이를 토대로 경영활동을 전개하는 중국 경내(홍콩•마카•오타이완 지역 제외)에 등록된 거주민기업을 지칭한다.  제3조 고신기술기업 인정 업무는 기업주체 부각, 기술혁신 격려, 동적관리 실시, 공평성•공정성 보장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 이 방법에 의거하여 인정을 받은 고신기술기업은 <기업소득세법> 및 그 <실시조례>, <중화인민공화국 조세징수관리법>(이하 '<조세징수관리법>') 및 <중화인민공화국 조세징수관리 실시세칙>(이하 '<실시세칙>')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신고절차를 거쳐 조세특혜 정책을 누릴 수 있다.  제5조 과기부, 재정부, 세무총국은 전국 고신기술기업 인정 업무에 대한 지도, 관리와 감독을 책임진다.  제2장 조직 및 실시  제6조 과기부, 재정부, 세무총국은 전국 고신기술기업 인정관리 업무 지도팀(이하 '지도팀')을 구성하며 그 주요 직책은 다음과 같다.  (1) 전국 고신기술기업 인정관리 업무의 방향을 확정하고 고신기술기업 인정관리 업무보고서를 심의한다.  (2) 인정관리 및 관련 정책 실행과 관련된 중대한 문제를 조율하고 해결한다.  (3) 고신기술기업 인정관리 사항에 관한 중대한 분쟁을 중재하고 각 지역의 인정관리 업무에 대한 감독검사를 실시하며 발견된 문제점의 시정을 지도한다.  제7조 지도팀 산하에 과기부, 재정부, 세무총국의 관련 인력으로 구성된 판공실을 설치하고 과기부에 그 사무실을 두며 다음 각 호의 주요 직책을 이행한다.  (1) 고신기술기업 인정관리 업무보고서를 제출하고 정책 보완책을 연구 및 제안한다.  (2) 각 지역의 고신기술 인정관리 업무를 지도하고 고신기술기업 인정관리 업무에 대한 감독검사를 조직 및 추진하며 발견된 문제점에 대한 시정•처리 방안을 제안한다.  (3) 각 지역 고신기술기업 인정 업무의 비안(備案) 관리를 담당하고 인정 통과 기업명단을 공표하며 고신기술기업증서 번호를 발급한다.  (4) '고신기술기업 인정관리 업무 사이트'를 구축 및 관리한다.  (5) 지도팀이 지시한 기타 업무를 수행한다.  제8조 각 성•자치구•직할시•계획단열시의 과기행정관리부서는 본 급 재정부서, 세무부서와 공동으로 해당 지역의 고신기술기업 인정관리기구(이하 '인정기구')를 구성한다. 인정기구 산하에 성급•계획단열시 과기•재정•세무부서의 관련 인력으로 구성된 판공실을 설치하고 성급•계획단열시 과기행정주관부서에 그 사무실을 둔다. 인정기구의 주요 직책은 다음과 같다.  (1) 본 행정구역 내의 고신기술기업 인정 업무를 담당하며 매년 지도팀 판공실에 본 지역 고신기술기업 인정관리 업무보고서를 제출한다.  (2) 인정한 고신기술기업을 요구에 따라 지도팀 판공실에 비안(備案)하고 비안을 통과한 기업에게 고신기술기업증서를 발급한다.  (3) 인정 업무에 참여하는 평가심사 전문가(기술전문가 및 재무전문가 포함)를 선발하고 감독관리를 강화한다.  (4) 인정 통과 기업에 대한 감독검사를 담당하고 재심사 신청 및 관련 제보 등 사항을 접수, 확인 및 처리하며 지도팀 및 그 판공실이 지시한 시정건의를 실행한다.  (5) 지도팀이 지시하는 기타 업무를 수행한다.  제9조 인정을 통과한 고신기술기업의 자격은 증서 발급일로부터 3년간 유효하다.  제10조 고신기술기업 자격을 획득한 기업은 고신기술기업증서 발급일 소속연도부터 조세특혜를 누리며 이 방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관할 세무기관에서 조세특혜 수속을 진행할 수 있다.  제3장 인정 조건 및 절차  제11조 고신기술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하여서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켜야 한다.  (1) 인정 신청 시점에 기업이 등록 및 설립된지 1년 이상이어야 한다.  (2) 자주적 개발, 양수, 수증, 인수합병 등 방식을 통하여 그 주요 제품(서비스)의 기술적으로 핵심 지원 기능을 발휘하는 지적재산권의 소유권을 획득한 기업이어야 한다.  (3) 기업의 주요 제품(서비스)의 핵심 지원 기능을 발휘하는 기술이 <국가에서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고신기술 분야>에 규정한 범위에 속하여야 한다.  (4) 연구개발 및 관련 기술혁신 활동에 종사하는 과학기술 인력이 당해 연도 기업의 총 직원 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 이상(10% 포함)이어야 한다.  (5) 기업의 최근 3개 회계연도(실제 경영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 실제 경영기간에 따라 계산. 아래도 이와 같음.)의 연구개발비용 총액이 동기 매출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다음 요구에 부합되어야 한다.  ① 최근 1년간의 매출이 5,000만위안 이하(5,000만위안 포함)인 기업은 그 비율이 5%보다 낮지 않아야 한다.  ② 최근 1년간의 매출이 5,000만위안 이상 2억위안 이하(2억위안 포함)인 기업은 그 비율이 4%보다 낮지 않아야 한다.  ③ 최근 1년간의 매출이 2억위안 이상인 기업은 그 비율이 3%보다 낮지 않아야 한다.  더불어 중국 경내에서 발생한 연구개발비용 총액이 전체 연구개발비용 총액의 60% 이상(60% 포함)을 차지하여야 한다.  (6) 최근 1년간 고신기술제품(서비스)의 수입이 기업의 동기 총 수입의 60% 이상(60% 포함)을 차지하여야 한다.  (7) 기업의 혁신능력 평가가 해당 요구에 도달하여야 한다.  (8) 기업이 인정을 신청하기 전 1년 내에 중대한 안전사고, 중대한 품질사고 또는 심각한 환경불법 행위가 없어야 한다.  제12조 고신기술기업의 인정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기업 신청  기업은 이 방법에 대조하여 자기평가를 진행한다. 인정조건에 부합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고신기술기업 인정관리 업무 사이트'에 등록•등기한 후 인정기구에 인정 신청을 제출한다.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고신기술기업 인정 신청서;  ② 기업의 적법한 설립을 증명하는 관련 등록•등기 증명서류;  ③ 지적재산권 관련 서류, 과학연구 프로젝트 입안(立項) 증명서류, 과학기술 성과 전환 및 연구개발 계획•관리 등에 관한 서류;  ④ 기업의 고신기술제품(서비스)의 핵심기술과 기술지표, 생산비준번호, 인증•인가 및 관련 자격증서, 제품품질검사보고서 등 관련 서류;  ⑤ 기업의 인력 및 과학기술인력 상황 설명서류;  ⑥ 자격을 구비한 중개기구가 발행한 기업의 최근 3개 회계연도의 연구개발비용 및 최근 1개 회계연도의 고신기술제품(서비스) 수입에 대한 특별감사보고서 또는 감정보고서,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설명자료 첨부 필요;  ⑦ 자격을 구비한 중개기구의 감정을 거친 기업의 최근 3개 회계연도의 재무회계보고서(재무제표, 제무제표 부록 및 재무상황 설명서 포함);  ⑧ 최근 3개 회계연도의 기업소득세 연도납세신고표.  (2) 전문가 평가심사  인정기구는 평가심사 요구에 부함되는 전문가 중에서 임의추출 방식으로 선정된 전문가들로 전문가팀을 구성하여야 한다. 전문가팀은 기업의 신청서류에 대한 평가심사를 실시하고 평가심사 의견을 제출한다.  (3) 심사인정  인정기구는 전문가팀의 평가심사 의견과 결부하여 신청기업에 대한 종합적 심사를 실시하고 인정의견을 도출하여 지도팀 판공실에 보고한다. 지도팀 판공실은 인정기업을 '고신기술기업 인정관리 업무 사이트'에 10일(근무일 기준)간 공시하며 이의가 없을 경우 비안(備案)을 허가하고 비안(備案) 통과 사실을 '고신기술기업 인정관리 업무 사이트'에 공고하며 인정기구가 통일적으로 인쇄제작한 '고신기술기업증서'를 기업에게 발급한다.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인정기구가 확인 및 처리한다.  제13조 고신기술기업 자격을 획득한 기업은 매년 5월 말까지 '고신기술기업 인정관리 업무 사이트'를 방문하여 직전연도의 지적재산권, 과학기술인력, 연구개발비용, 경영수입 등 연도발전상황표를 작성 및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 기밀과 관련된 기업은 국가의 비밀업무 관련 규정에 따라 비밀정보의 안전을 확보한 전제하에서 인정업무 절차에 따라 인정을 진행한다.  제4장 감독관리  제15조 과기부•재정부•세무총국은 임의추출검사 및 중점검사 매커니즘을 구축하고 각 지의 고신기술기업 인정관리 업무에 대한 감독검사를 강화한다. 문제점이 존재하는 인정기구에 대하여 시정의견을 제시하고 기한부 시정을 명하며 문제가 심각한 경우 통보 지적하고 기한이 경과될 때까지 시정하지 아니할 경우 인정관리 업무를 일시적으로 중단시킨다.  제16조 관련 부서는 일상 감독관리 과정에서 인정 통과 고신기술기업이 인정 조건에 부합되지 아니함을 발견한 경우 인정기구에 재심사를 제청하여야 한다. 재심사를 통하여 인정 조건에 부합되지 아니함이 확인된 경우 인정기구는 해당 고신기술기업의 자격을 취소하고 세무기관에 통보하여 인정 조건 불충족 연도에 이미 누린 조세특혜를 추징하도록 한다.  제17조 고신기술기업이 명칭을 변경하였거나 인정 조건과 연관된 중대한 변화(분할, 합명, 구조조정 및 경영업무의 변화 등)가 발생한 경우 3개월 내에 인정기구에 보고하여야 한다. 인정기구의 심사를 통하여 인정 조건에 부합됨이 확인된 경우 그 고신기술기업 자격은 변하지 아니하며 명칭이 변경된 경우에는 인정증서를 재발급하되 번호와 유효기간은 변하지 아니한다. 인정조건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명칭 변경 또는 조건 변화 연도부터 그 고신기술기업 자격을 취소한다.  제18조 기타 인정기구의 관할구역으로 일괄 이전하는 고신기술기업이 그 고신기술기업 자격 유효기 내에 이전을 완성하는 경우 그 자격은 계속 유효하다. 기타 인정기구의 관할구역으로 일부 이전하는 경우 전입지역의 인정기구가 이 방법에 따라 다시 인정한다.  제19조 인정 통과 고신기술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행한 경우 인정기구는 그 고신기술기업 자격을 취소한다.  (1) 인정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심각한 허위조작 행위를 행한 경우;  (2) 중대한 안전사고, 품질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심각한 환경법 위반행위를 행한 경우;  (3) 규정한 기한 내에 인정 조건과 관련된 중대한 변화 사항을 보고하지 아니하였거나 누적하여 2년 연도발전상황보고서를 작성 및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기업이 고신기술기업 자격을 취소당한 경우 인정기구가 세무기관에 통보하여 <조세징수관리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상기 행위 발생일 소속연도부터 이미 누린 고신기술기업 조세특혜를 추징하도록 한다.  제20조 고신기술기업 인정 업무에 참여하는 각 유형의 기구와 인력은 그가 담당하는 관련 업무에 대하여 신의성실, 준법성, 비밀유지 의무를 부담한다. 고신기술기업 인정 업무의 관련 요구와 기율을 위반한 경우 해당 처리조치를 취한다.  제5장 부칙  제21조 과기부•재정부•세무총국은 이 방법에 근거하여 <고신기술기업 인정관리 업무지침>을 별도로 제정할 수 있다.  제22조 이 방법은 과기부•재정부•세무총국이 책임지고 해석한다.  제23조 이 방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실시한다. 기존 <고신기술기업 인정 관리방법>(국과발화[2008]172)호는 동시에 폐지한다.  첨부 : 국가에서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고신기술 분야 |  | **科技部、财政部、国家税务总局**  **关于修订印发《高新技术企业认定管理办法》的通知**  国科发火〔2016〕32号  各省、自治区、直辖市及计划单列市科技厅（委、局）、财政厅（局）、国家税务局、地方税务局：  根据《中华人民共和国企业所得税法》及其实施条例有关规定，为加大对科技型企业特别是中小企业的政策扶持，有力推动大众创业、万众创新，培育创造新技术、新业态和提供新供给的生力军，促进经济升级发展，科技部、财政部、国家税务总局对《高新技术企业认定管理办法》进行了修订完善。经国务院批准，现将新修订的《高新技术企业认定管理办法》印发给你们，请遵照执行。  科技部  财政部  国家税务总局  2016年1月29日  高新技术企业认定管理办法  第一章 总 则  第一条 为扶持和鼓励高新技术企业发展，根据《中华人民共和国企业所得税法》（以下称《企业所得税法》）、《中华人民共和国企业所得税法实施条例》（以下称《实施条例》）有关规定，特制定本办法。  第二条 本办法所称的高新技术企业是指：在《国家重点支持的高新技术领域》内，持续进行研究开发与技术成果转化，形成企业核心自主知识产权，并以此为基础开展经营活动，在中国境内（不包括港、澳、台地区）注册的居民企业。  第三条 高新技术企业认定管理工作应遵循突出企业主体、鼓励技术创新、实施动态管理、坚持公平公正的原则。  第四条 依据本办法认定的高新技术企业，可依照《企业所得税法》及其《实施条例》、《中华人民共和国税收征收管理法》（以下称《税收征管法》）及《中华人民共和国税收征收管理法实施细则》（以下称《实施细则》）等有关规定，申报享受税收优惠政策。  第五条 科技部、财政部、税务总局负责全国高新技术企业认定工作的指导、管理和监督。  第二章 组织与实施  第六条 科技部、财政部、税务总局组成全国高新技术企业认定管理工作领导小组（以下称“领导小组”），其主要职责为：  （一）确定全国高新技术企业认定管理工作方向，审议高新技术企业认定管理工作报告；  （二）协调、解决认定管理及相关政策落实中的重大问题；  （三）裁决高新技术企业认定管理事项中的重大争议，监督、检查各地区认定管理工作，对发现的问题指导整改。  第七条 领导小组下设办公室，由科技部、财政部、税务总局相关人员组成，办公室设在科技部，其主要职责为：  （一）提交高新技术企业认定管理工作报告，研究提出政策完善建议；  （二）指导各地区高新技术企业认定管理工作，组织开展对高新技术企业认定管理工作的监督检查，对发现的问题提出整改处理建议；  （三）负责各地区高新技术企业认定工作的备案管理，公布认定的高新技术企业名单，核发高新技术企业证书编号；  （四）建设并管理“高新技术企业认定管理工作网”；  （五）完成领导小组交办的其他工作。  第八条 各省、自治区、直辖市、计划单列市科技行政管理部门同本级财政、税务部门组成本地区高新技术企业认定管理机构（以下称“认定机构”）。认定机构下设办公室，由省级、计划单列市科技、财政、税务部门相关人员组成，办公室设在省级、计划单列市科技行政主管部门。认定机构主要职责为：  （一）负责本行政区域内的高新技术企业认定工作，每年向领导小组办公室提交本地区高新技术企业认定管理工作报告；  （二）负责将认定后的高新技术企业按要求报领导小组办公室备案，对通过备案的企业颁发高新技术企业证书；  （三）负责遴选参与认定工作的评审专家（包括技术专家和财务专家），并加强监督管理；  （四）负责对已认定企业进行监督检查，受理、核实并处理复核申请及有关举报等事项，落实领导小组及其办公室提出的整改建议；  （五）完成领导小组办公室交办的其他工作。  第九条 通过认定的高新技术企业，其资格自颁发证书之日起有效期为三年。  第十条 企业获得高新技术企业资格后，自高新技术企业证书颁发之日所在年度起享受税收优惠，可依照本办法第四条的规定到主管税务机关办理税收优惠手续。  第三章 认定条件与程序  第十一条 认定为高新技术企业须同时满足以下条件：  （一）企业申请认定时须注册成立一年以上；  （二）企业通过自主研发、受让、受赠、并购等方式，获得对其主要产品（服务）在技术上发挥核心支持作用的知识产权的所有权；  （三）对企业主要产品（服务）发挥核心支持作用的技术属于《国家重点支持的高新技术领域》规定的范围；  （四）企业从事研发和相关技术创新活动的科技人员占企业当年职工总数的比例不低于10%；  （五）企业近三个会计年度（实际经营期不满三年的按实际经营时间计算，下同）的研究开发费用总额占同期销售收入总额的比例符合如下要求：  1. 最近一年销售收入小于5,000万元（含）的企业，比例不低于5%；  2. 最近一年销售收入在5,000万元至2亿元（含）的企业，比例不低于4%；  3. 最近一年销售收入在2亿元以上的企业，比例不低于3%。  其中，企业在中国境内发生的研究开发费用总额占全部研究开发费用总额的比例不低于60%；  （六）近一年高新技术产品（服务）收入占企业同期总收入的比例不低于60%；  （七）企业创新能力评价应达到相应要求；  （八）企业申请认定前一年内未发生重大安全、重大质量事故或严重环境违法行为。  第十二条 高新技术企业认定程序如下：  （一）企业申请  企业对照本办法进行自我评价。认为符合认定条件的在“高新技术企业认定管理工作网”注册登记，向认定机构提出认定申请。申请时提交下列材料：  1. 高新技术企业认定申请书；  2. 证明企业依法成立的相关注册登记证件；  3. 知识产权相关材料、科研项目立项证明、科技成果转化、研究开发的组织管理等相关材料；  4. 企业高新技术产品（服务）的关键技术和技术指标、生产批文、认证认可和相关资质证书、产品质量检验报告等相关材料；  5. 企业职工和科技人员情况说明材料；  6. 经具有资质的中介机构出具的企业近三个会计年度研究开发费用和近一个会计年度高新技术产品（服务）收入专项审计或鉴证报告，并附研究开发活动说明材料；  7. 经具有资质的中介机构鉴证的企业近三个会计年度的财务会计报告（包括会计报表、会计报表附注和财务情况说明书）；  8. 近三个会计年度企业所得税年度纳税申报表。  （二）专家评审  认定机构应在符合评审要求的专家中，随机抽取组成专家组。专家组对企业申报材料进行评审，提出评审意见。  （三）审查认定  认定机构结合专家组评审意见，对申请企业进行综合审查，提出认定意见并报领导小组办公室。认定企业由领导小组办公室在“高新技术企业认定管理工作网”公示10个工作日，无异议的，予以备案，并在“高新技术企业认定管理工作网”公告，由认定机构向企业颁发统一印制的“高新技术企业证书”；有异议的，由认定机构进行核实处理。  第十三条 企业获得高新技术企业资格后，应每年5月底前在“高新技术企业认定管理工作网”填报上一年度知识产权、科技人员、研发费用、经营收入等年度发展情况报表。  第十四条 对于涉密企业，按照国家有关保密工作规定，在确保涉密信息安全的前提下，按认定工作程序组织认定。  第四章 监督管理  第十五条 科技部、财政部、税务总局建立随机抽查和重点检查机制，加强对各地高新技术企业认定管理工作的监督检查。对存在问题的认定机构提出整改意见并限期改正，问题严重的给予通报批评，逾期不改的暂停其认定管理工作。  第十六条 对已认定的高新技术企业，有关部门在日常管理过程中发现其不符合认定条件的，应提请认定机构复核。复核后确认不符合认定条件的，由认定机构取消其高新技术企业资格，并通知税务机关追缴其不符合认定条件年度起已享受的税收优惠。  第十七条 高新技术企业发生更名或与认定条件有关的重大变化（如分立、合并、重组以及经营业务发生变化等）应在三个月内向认定机构报告。经认定机构审核符合认定条件的，其高新技术企业资格不变，对于企业更名的，重新核发认定证书，编号与有效期不变；不符合认定条件的，自更名或条件变化年度起取消其高新技术企业资格。  第十八条 跨认定机构管理区域整体迁移的高新技术企业，在其高新技术企业资格有效期内完成迁移的，其资格继续有效；跨认定机构管理区域部分搬迁的，由迁入地认定机构按照本办法重新认定。  第十九条 已认定的高新技术企业有下列行为之一的，由认定机构取消其高新技术企业资格：  （一）在申请认定过程中存在严重弄虚作假行为的；  （二）发生重大安全、重大质量事故或有严重环境违法行为的；  （三）未按期报告与认定条件有关重大变化情况，或累计两年未填报年度发展情况报表的。  对被取消高新技术企业资格的企业，由认定机构通知税务机关按《税收征管法》及有关规定，追缴其自发生上述行为之日所属年度起已享受的高新技术企业税收优惠。  第二十条 参与高新技术企业认定工作的各类机构和人员对所承担的有关工作负有诚信、合规、保密义务。违反高新技术企业认定工作相关要求和纪律的，给予相应处理。  第五章 附 则  第二十一条 科技部、财政部、税务总局根据本办法另行制定《高新技术企业认定管理工作指引》。  第二十二条 本办法由科技部、财政部、税务总局负责解释。  第二十三条 本办法自2016年1月1日起实施。原《高新技术企业认定管理办法》（国科发火[2008]172号）同时废止。  附件：国家重点支持的高新技术领域 |